

애들레이드 한인 공동체 사목회 회칙

제 1장 총 칙

제 1조 (명칭과 소재)

본회는 애들레이드 대교구 한인 가톨릭 공동체 사목회라 칭하며, 소재는 노우드 St. Ignatius Parish 사무실에 둔다.

제 2조 (목적)

본회의 목적은 전신자를 위하여 공동체의 원활한 사목활동과 운영을 도모하며 교회의 지상과제인 선교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봉사한다.

제 3조 (성격)

- ① 본회는 본당사제의 자문기구인 동시에 협력기구로서 본당 공동체의 제반 사항을 연구, 심의하고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추진한다.
- ② 본회는 본당 평신도 사도직 공동체이며 본당사제의 지도를 받아 사도직 활동을 하는 교회의 공적 사목회이다.

제 4조 (주보성인)

본회의 주보성인은 정하상 바오로로 정하며, 주보성인의 신앙과 삶을 본받아 사목회는 평신도 사도직의 봉사직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.

제 2장 조직

제 5조 (구성)

1. 본회는 회장, 부회장, 감사(재정분과장), 각 분과장, 총무 및 구역장으로 구성한다.
2.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당사제가 임명한다.
3. 감사, 분과장 및 총무는 회장의 제청으로 본당사제가 임명한다.
4. 구역장은 구역회의에서 선출하고 본당사제가 임명한다.

제 6조 (총회)

총회는 애들레이드 한인가톨릭공동체의 세례를 받은 전 신자들로 구성한다.

제7조 (분과)

1. 전례분과
2. 선교.교육분과
3. 재정분과
4. 구역분과
5. 홍보분과

제8장 임무 및 임기

제6조 (회장)

회장은 한인 가톨릭공동체의 평신도를 대표하고, 사제를 보좌하여 각 구역 및 분과회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.

제9조 (부회장)

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 그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 (분과장 및 총무)

1. 분과장은 해당 분과 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회의 모든업무를 관장한다.
2. 각 분과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매월 필요시 회의를 갖는다.
 - a. 전례분과장은 미사전례및 교회예식에 관한 사항과 제대, 복사단, 해설단및 성가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.(소속: 해설단, 제대회, 성가대, 성체성혈 봉사단, 복사단)
 - b. 선교.교육분과장은 본당 선교 및 전 교우의 교육, 예비자 교리 등을 담당한다.(소속: 레지오, 교리교사회, 주일학교 교사회, 마리아회)
 - c. 재정분과장은 공동체 예산의 편성, 관리와 결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.(감사 겸임)
 - d. 구역분과장은 각 구역의 대표자들 (구역장, 총무) 로 구성되며, 구역별 소공동체 모임 및 월별 전례와 식사봉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.
 - e. 홍보분과장은 본당의 제반 홍보(인터넷, 주보제작)를 담당 한다.
 - f.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사목회의 다음과 같은 사항(사목회의 소집연락, 각종 회의록 작성, 문서수발 보관, 기타 타분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)을 담당한다.

제11조 (감사)

본당의 재정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감사한다.

제 12 조 (구역장)

1. 구역장은 구역모임을 주관하고, 전입/전출 세대 관리 및 구역신자의 신앙생활을 독려한다.
2. 구역장은 필요시 총무와 반장을 선임 할 수 있다.

제 13조 (임기)

본회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1. 모든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(단, 연임할 수 있다.)
2. 새로 보선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4조 (회장 및 임원 선출시기 및 임기시작일)

본회 회장및 임원의 선출은 해당 년도 10월 마지막 주 미사 후에 한다. 신임회장및 임원의 임기시작일은 해당년도 11월 마지막 주일로 한다.

제 15조 (인수인계서)

전임 회장은 공동체 운영관련 사항과 문서, 운영비 및 제반 비품 등을 11월 마지막주일까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신임 회장에게 인계 한다.

제 4장 회의

제16조 (총회)

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.
2. 정기총회는 매11월 마지막 주에 한다.
3. 임시회는 사목회의 결의 및 필요시 주임신부의 승인 하에 회장이 소집한다.
4.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다
 - 1) 사목회에서 상정한 운영계획
 - 2) 예산과 결산에 관한사항
 - 3) 임원의 선출및 보선
 - 4) 회칙개정에 관한사항
 - 5) 기타 공동체 운영 및 사목활동에 관계된 중요사항

제17조 (사목회)

사목회는 월 1회 정기적인 회합을 갖는다.

제 18조 (정족수)

모든회는 한주 전에, 총회의 경우는 4주 전에 공고하고, 총회는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동수일때는 회장이 결정한다. 각 단체 회의는 단체회칙에 따르되, 회칙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는 교회 관례에 따른다.

제 5 장 재정

제 19조 (재정)

본 회의 재정은 주일헌금, 찬조금, 교구청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(시행은 추후에 논의한다.)

제 20 조 (회계년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

1.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.
2. 이 회칙 시행 이전의 모든 회칙 및 이와 유사한 규약은 폐지한다. 회의록은 본당 문서로 보존한다.
3. 본 회칙은 필요한 경우 사목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.
4. 이 회칙은 2013년 1월부터 시작한다.
5. 개정일 2014 년 11월 30일.

애델레이드 한인 가톨릭 공동체 본당신부 (사인) :